

화장품 품질 및 안전기준

목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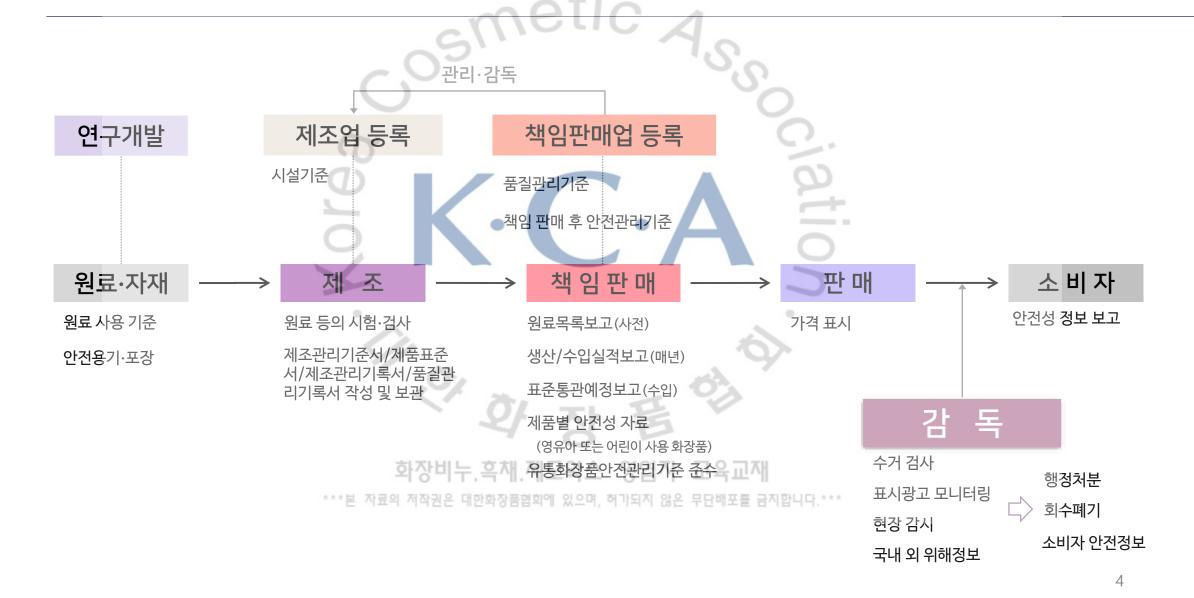
- 01 품질 안전 관리 개요
- 02 화장품 안전 관리 기준
- 03 화장품 품질 관리 기준
- 04 제품별 안전성 자료
- 05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
- **화장비누.흑채.제모왁스 영엽자 교육교재** 0 6 안 전용기 • 포 장***본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있으며, 허가되지 않은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.***

품질 안전 관리 개요

Part 1.

화장비누.흑채.제모왁스 영엽자 교육교재

화장품 관리 체계



Part 2. 화장품 안전 관리 기준

화장비누.흑채.제모왁스 영엽자 교육교재

Part 2 화장품 원료 기준

-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존제, 색소, 자외선차단제와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지정하여야 함
 - ⇒ 사용기준이 지정·고시된 원료 외의 보존제, 색소, 자외선차단제는 사용할 수 없음
- 고시『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』
 - ⇒ 사용할 수 없는 원료,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(보존제, 자외선차단제, 염모제, 기타), 맞춤형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, 유통화장품 안전 관리 기준 등
- 고시『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』 교육교제
 - ⇒ 색소(타르색소, 비타르색초, 염모용 화장품에만 자용할 수 있는 색소)

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사용할 수 없는 원료

● 1,033 종(글루코코르티코이드, 방사성 물질, 항생물질 등)

K-C-A

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

- 보존제: 59종(페녹시에탄올, 사용한도 1% 등)
- 자외선 차단성분 : 30종(티타늄디옥사이드, 사용한도 25% 등)
- 염모제: 48종(p-니트로-o-페닐렌디아민, 사용한도 산화형 염모제에 1.5% 등)
- 기타: 78종(비타민 E, 사용한도 20% 등)

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

맞춤형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

-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정하고, 그 외 원료는 사용이 가능함
-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
 - * 별표 1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
 - * 별표 2의 화장품에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
 - ➡ 원료의 품질 유지를 위해 원료에 보존제가 포함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
 - *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능성화장품의 효능 ·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
 - ➡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「화장품법」 제4조에 따라 해당 원료를 포함하여 기능성화 장품에 대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사용 가능

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

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

※ 화장품의 색소는 고시되어 있는 색소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

「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」

- 타르색소:84종
 - ▷ 눈주위 및 입술에 사용할 수 없음
 - ▷ 눈주위에 사용할 수 없음
 - ▷ 염모용 화장품에만 사용
 - ▷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 사용할 수 없음

화장비누 흑재 제모왁스 영엽자

- ▷ 적용 후 바로 씻어내는 제품 및 염모용 화장품에만 사용 ──
- ▷ 점막에 사용할 수 없음
- ▷ 화장 비누에만 사용
- ▷ 사용 제한 없음

- ***본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있으며, 허가되지 않은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. ***
- 화장품의 타르색소 이외의 색소(천연, 무기 등): 45종

화장품 품질 관리 기준

Part 3.

화장비누.흑채.제모왁스 영엽자 교육교재

화장품 품질 관리 기준

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 (화장품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12조)

-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할 것
-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할 것
-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시킬 것
 - ▷ 제조 또는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제조 또는 품질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, 그 최종 제품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
- 제품과 관련하여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·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, 정보사항(화장품 사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사례를 포함한다) 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고,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

화장품 품질 관리 기준

품질 검사 기준

- 제조번호(LOT)별 품질검사 실시
- 품질검사 항목: 식약처 고시 「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의 제5조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중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검사항목 설정

<참고> 제조업자의 품질검사 의무

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·검사 또는 검정

* 근거법령 : 화장품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제모약수 영업자 교육교제

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

공통기준

● 비의도적 오염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

- ▷ 납 : 점토를 원료로 사용한 분말제품은 50µg/g이하, 그 밖의 제품은 20µg/g이하
- ▷ 니켈: 눈 화장용 제품은 35μg/g 이하, 색조 화장용 제품은 30μg/g이하, 그 밖의 제품은 10μg/g 이하
- ▷ 비소:10µg/g이하
- ▷ 수은:1µg/g이하
- ▷ 안티몬: 10µg/g이하
- ▷ 카드뮴: 5µg/g이하
- ▷ 디옥산: 100µg/g이하
- ▷ 메탄올 : 0.2(v/v)%이하, 물휴지는 0.002%(v/v)이하 ____
- ▷ 포름알데하이드: 2000µg/g이하, 물휴지는 20µg/g이하않으며, 하기되지 않은 무단배포를 급지합니다.**
- ▷ 프탈레이트류(디부틸프탈레이트,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및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에 한함): 총 합으로서 100μg/g이하

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

공통기준

● 미생물 한도

- ▷ 총 호기성세균
 - 영·유아용 제품류 및 눈화장용 제품류의 경우: 500개/g(ml)
 - 기타 화장품의 경우 : 1000개/g(ml)
- ▷ 물휴지의 경우 세균 및 진균수 : 각각 100개/ g(ml)
- ▷ 대장균, 녹농균, 황색포도상구균은 불검출

● 내용량

- ▷ 제품3개 평균 97%이상 (화장 비누의 경우 건조중량을 내용량으로 함)※ 기준치를 벗어날 경우 : 6개를 더 취하여 시험할 때 9개 평균으로 97% 이상
- ▷ 그 밖에 특수한 제품 : 대한민국약전외 일반시험법에 따른다

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

유형별 기준

- pH: 3.0~9.0 (액, 로션, 크림 및 이와 유사한 제형의 액상 제품)
 - ▷ 영·유아용 샴푸, 린스, 세정용 제품, 목욕용 제품 제외
 - ▷ 두발용 제품류 중 샴푸, 린스 제외
 - ▷ 면도용 제품류 중 셰이빙 크림, 세이빙 폼 제외
 - ▷ 기초화장품제품류 중 클렌징 워터, 클렌징 오일, 클렌징 로션, 클렌징 크림 등 메이컵 리무버 제품 제외
 - ▷ 물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과 사용 후 곧바로 씻어내는 제품 제외
- 기능성화장품 : 심사 또는 보고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
- 퍼머넌트웨이브용 (6종) 및 헤어스트레이트너(3종) 기준_{업자 교육교}
- 유리알칼리 0.1% 이하(화장[™]비누에 한함)^{장품협회에 있으며, 허가되지 않은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.**}

〈참고〉 화장비누 품질검사기록서 양식 예시

동일한 처방을 가진 AA제품에 대해 최초 1회에 수분 및 휘발성 물질, 순비누분, 유리알칼리, 석유에터가용성분에 대해 외부기관에 시험을 하고, 제조번호별로 색상 외관검사를 하는 경우

<예> 품질검사기록서



ны	적합: O		
34	부적합: X		

제품명	제조일자	제조번호	검사항목	검사 결과	검사 일자	작성자	승인자	비고
AA	20200907	SOAP001COS	외부시험기관 시험결과서 별청	외부시험기관 시험결과서 별첨	20200907 [자 교육	갑 교재	野0	최초 제조번호에 대해 외부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
AA	20200910	***분 자료 ⁹ SOAP002COS	기 저작권은 대한화장품협 색상	회에 있으며, 허가되지 O	않은 무단배 20200910	포를 금지합니 갑	다.***	

제품별 안전성 자료

Part 4.

화장비누.흑채.제모왁스 영엽자 교육교재

Part 4 제품별 안전성 자료 작성

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작성·보관 (화장품법 제4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의3)

-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"제품별 안전성 자료" 작성 및 보관 의무
- 자료 작성 대상 제품 영유아_(만3세이하) 또는 어린이_(만4세이상 만13세이하)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 · 광고하는 화장품
 - ▷ 제품별 안전성 자료
 - 1.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
 - 2.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영엽자 교육교재
 - ***본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있으며, 허가되지 않은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.***
 - 3. 제품의 효능 · 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

[™] 제품별 안전성 자료 보관

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작성·보관 (화장품법 제4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의3)

- 보관 기간
 - □ 1차 포장에 사용기한을 표시하는 경우
 표시 · 광고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제조 · 수입된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까지의 기간
 - □ 1차 포장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표시 · 광고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제조 · 수입된 제품의 제조연월일 이후 3년까지의 기간

※ 제조 및 수입 기준

화장비누.흑채.제모왁스 영엽자 교육교재

- 제조 : 화장품의 제조번호에 따른 제조일자 기준
- 수입 : 통관일자 기준

Part 4

[참고] 영유아 및 어린이 화장품

영유아 (만 3세 이하)

● 연령: 만 3세 이하

가. 영·유아용(만 3세 이하의 어린이용) 제품류

- 1) 영 · 유아용 샴푸, 린스
- 2) 영 · 유아용 로션, 크림
- 3) 영 · 유아용 오일
- 4) 영 · 유아 인체 세정용 제품
- 5) 영 · 유아 목욕용 제품

어린이 (만4세 이상 ~ 만13세 이하)

● 연령 : 만 4세 이상 ~ 만 13세 이하

어린이용 제품(만 13세 이하 어린이 대상 제품)임을 특정하여 표시·광고하려는 경우

예시:

어린이 관련 문자 : 아이, 어린이, 키즈, 칠드런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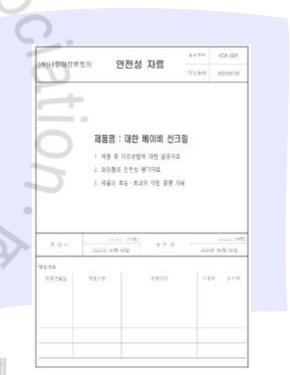
대상 연령(만4세~13세 이하)을 나타내는 숫자

어린 아이 사진, 그림을 사용

Part 4

제품별 안전성 자료 작성 목차

- 1.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
 - 가. 제품에 대한 설명 자료
 - 나.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
- 2.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
 - 가. 제조 시 사용된 원료 및 제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
 - 1) 원료에 대한 검토자료
 - 2) 제품에 대한 검토자료
 - 나. 사용 후 이상사례 정보의 수집·검토·평가 및 조치 관련 자료
 - 다. 제품 안전성 평가 결과



- 3. 제품의 효능 · 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이 부 목
 - 가. 기능성화장품의 효능 · 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
 - 나. 제품의 표시 · 광고 중 사실에 관한 실증 자료

※ 협회 홈페이지 – 공지사항 –

(대한화장품협회)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작성방법 안내서

smetic Part 5.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

화장비누.흑채.제모왁스 영엽자 교육교재

안전성 정보 보고 체계

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

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

안전성 ·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,

정보 사항(화장품 사용 부작용 발생사례 포함) 등을

알게 되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여,

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함부 자료의 저작권은 대한화장품열회에 있으며, 허가되지 않은 무단배포를 금지합니다.*



용어의 정의

- "유해사례_(Adverse Event/Adverse Experience, AE)"
 화장품의 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, 증상 또는 질병
 당해 화장품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님
- **"중대한 유해사례**(Serious AE)*"* 유해사례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가. **사망을 초래**하거나 **생명을 위협**하는 경우
 - 나.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
 - 다. 지속적 또는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를 초래하는 경우입자 교육교재
 - 라. **선천적 기형** 또는 **이상을 초래**하는 경우
 - 마.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

용어의 정의

"실마리 정보(Signal)"

유해사례와 화장품 간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정보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것

● "안전성 정보"

화장품과 관련하여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·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, 유해사례 정보 등



보고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"없음"으로 보고해야 함, 하기되지 않은 무단배표를 금지합니다.**

단,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예외 적용 가능

Part 6. 안전용기·포장



화장비누.흑채.제모왁스 영엽자 교육교재

화장품 안전용기 · 포장

● "안전용기·포장"

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·고안된 용기나 포장

※ 개봉하기 어려운 정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시험방법

: 산업자원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「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」에 따름

화장비누.흑채.제모왁스 영엽자 교육교자

화장품 안전용기 · 포장

- 안전용기·포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품목
 - 1.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
 - 2.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포장 당 탄화수소류를 1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(섭씨 40 도 기준) 이하인 비에멀젼 타입의 액체상태의 제품
 - 3. 개별 포장 당 메틸살리실레이트를 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액체상태의 제품
- 안전용기·포장 제외 품목

: 일회용 제품, 용기 입구 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, 압축 분무용기 제품(에**어로졸** 제품 등) 제외

화장비누.흑채.제모왁스 영엽자 교육교재

osmetic A

화장비누.흑채.제모왁스 영엽자 교육교재

